#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15

발의연월일: 2022. 10. 14.

발 의 자:류성걸·주호영·김영선

김상훈 • 윤영석 • 배준영

조해진 • 박 진 • 안병길

김용판 · 이양수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세법상 취급의 상이함으로 인해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는 세무 목적상 과세대상인 실체(법인)로 보지 않는 반면,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에서는 과세 실체로 보는 이른바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법인등 단체의 설립지국 및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 모두에서 과세되지 않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을 권고하였음.

OECD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 임(안 제34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3절의2(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① 이 조 에서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 1.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 2.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을 구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 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국외투

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 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받은 출자자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 ⑥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 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 로 본다.
- ⑦ 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이 출자자등의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출자자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⑧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으로서 제2항에 따라 출자자등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출자자등에게 부과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⑨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출자자등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 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_    |
|                    |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 <u>&lt;신 설&gt;</u> |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 |
|                    | 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① |
|                    |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란 다 |
|                    |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
|                    | 는 단체를 말한다.        |
|                    | 1.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
|                    |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 |
|                    | 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   |
|                    |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                    |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   |
|                    | 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   |
|                    | (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 |
|                    | <u>이라 한다)일 것</u>  |
|                    | 2.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
|                    |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   |
|                    | 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   |
|                    | 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   |
|                    | 등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   |
|                    | 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
|                    |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
|                    |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  |
|                    | 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

# 것

- ②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 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의 적용 신청을한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 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받은 출자자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 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 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 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 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 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 득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

- ① 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이 출자자등의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출자자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⑧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으로서 제2항에 따라 출자자등에게 직 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소득 에 대하여 외국에서 출자자등에 게 부과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인세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 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⑨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
 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출자자 등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